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 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 안 61 번 호 제출일자 : 2010. 10.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1. 개정이유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가 2010.8.31자로 폐지되고,
- 나. 교육과학기술부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교육자치법규 내의 기관명칭 및 직위명칭을 일괄개정하며,
-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개정 및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등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조 (법률 제8069호, 2006.12.20, 전부개정)
-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4842호, 2010.7.26, 일부개정)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교육규칙 제501호, 2010.9.1, 전부개정)

#### 3.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 문구 삭제 또는 변경 (안 제1조, 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 나.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및 직위명칭 변경 (안 제2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 다.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 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및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폐지 (안 부칙 제2조)
- 4. 일괄개정조례(안): 붙임
-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1조(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의 개정) 인 천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학무국장(강화교육청은 학무과장)"을 "교육지원 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교육

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 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을 "「평생교육법」 제21조제 3항"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3과"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와"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 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 무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제7조(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관리과"를 "학교운영지원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로 한다.

- 제8조(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 제9조(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5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기금운영상"을 "기금운용상"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0조(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 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 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 항과 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1조(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을 "교육감 소

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다만,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과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지리적 특성 등을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 제13조(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과 제6조제4항 중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교육 협력과장"으로 한다.

제14조(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관리국장(강화교육청은 교육장으로 한다) "를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장으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를 각각 "시의회"로 한다.

제15조(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을 말한다." 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6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 중 "급여"를 "공급"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를 "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속회계관계공무원재 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

제17조(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50억원"을 "70억원"으로 하고,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제18조(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 직원수련원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 한다.

별표 1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가족"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직원과 그 가족"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①인천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는 폐지한다.

②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 7                            | }                  | (안)               | 비고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  |                              |                    |                   | 감사담당관실      |
|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생략> 2. 4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위원 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 제 <b>2조(구성</b><br>2. 4인의 우                         | <b>및 선</b> 임<br>1원은 <u>J</u> | ] 방법)              |                   | 교육위원회<br>폐지 |
| 또는 임명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원회교육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자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② <현행과<br>③ < <u>삭 제</u>                           |                              |                    |                   | 교육위원회<br>폐지 |
| 제3조(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한다. 1.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한다.<br>1. < <u>삭 제</u>                             | 관할 1<br><u>&gt;</u><br>소속 4급 | 대상은<br>급 이하        | 다음 각호로<br>공무원과 그  | 교육위원회<br>폐지 |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및 교육감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교육위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교육감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행과 같음> ② <u>교육감 :</u><br>위원의 임기<br>임명 당시의<br>로 한다. | 소속 공<br>]는 제 <b>1</b>        | 무원 <i>(</i><br>항에도 | 중에서 임명된<br>E 불구하고 | 교육위원회<br>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 인천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br>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중ㆍ고등학교특별장학생<br>에관한조례   | 교육과정<br>기획과       |
| <생략> ③ 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u>학무국장</u> (강화교육청은 학무과장)이 되고, 위원 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             | 제9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각각 부교육감과 교육지원 국장(강화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과장) 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다 | 2010.9.1자<br>조직개편 |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br>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br>운영 조례  | 평생교육<br>체육과       |
|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생략> 1.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 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실시하   | 교육위원회<br>폐지       |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 · 운영<br>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지정 · 운영<br>에관한조례  | 평생교육<br>체육과       |
| 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 「평생교육<br>법」개정     |

| 현 행  | 개  | 정   | (안)   | 비고                              |
|--|--|---|---|---------------------------------|
|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br>조례  | 인천광역시  | 학교환경 <sup>:</sup><br>조 i  |   | 평생교육<br>체육과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6조와 같은<br>의 설립·운영<br>률」제5조와<br>항에 따른 인<br>화위원회(이항                                     | 법 시행정<br>형 및 과외<br>같은 법 시<br>천광역시<br>사 " 위원회                          | 교습에 관한 법<br> 행령 제4조제4<br>학교환경위생정<br>"라 한다) 구성 | 「학교보건법<br>시행령」개정                |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br>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br>제9조(직권면직) 1. 신체·정신상의 장<br>애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br>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br>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 직<br>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때       | <b>공무원</b> 제9조(직권면<br>애로 <u>「인천</u> 평<br>무원 복무 조<br>규정에 의한                             | 의임용등<br>직) 1. 신 <sup>5</sup><br>상역시교육<br>례 <sub>의</sub> 제172<br>휴가기간이 | 상 직무를 감당                                      | <b>총무과</b><br>조례 제명<br>변경       |
| <b>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b> 제 <b>9조(공인관수자)</b> 공인관수자는 다음<br>구분에 의한다. 1. ~ 3. <생략> 4. 교육장의 직인(민원실 전용 직인 포함) : 관리과 서무주무담당자   | 제 <b>9조(공인관</b><br>구분에 의한다<br>1. ~ 3. <현 <sup>†</sup><br>4. 교육장의<br>함): <mark>학</mark> | <b>수자)</b> 공인<br>가.<br>행과 같음><br>직인(민원<br>교 <b>운영지</b>                |   | <b>총무과</b><br>2010.9.1자<br>조직개편 |
| 5. ~ 8. <생략>   | 5. ~ 8. <현 <sup>3</sup>  | 행과 같음>  | •   |                                 |

| 현 행   | 개   | 정   | (안)   | 비고                           |
|---|---|---|---|------------------------------|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br>관리조례   | 인천광역시   | 교육비특<br>관리:                                   | ·별회계보조금<br>조례                                 | 예산지원과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br>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br>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br>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br>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br>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b>17조 및 집</b><br><u>항</u> 의 규정에<br>특별회계에서<br>대상, 교부방 | <mark>은 법 시</mark><br>의하여 인<br>보조하는<br>법 및 사용 | 행령 제29조제5<br>천광역시교육비<br>보조금의 교부<br>- 등에 관하여 필 | 「지방재정법」<br>「지방재정법<br>시행령」 개정 |
|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br>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   | 감채기금 설치<br>에 관한 조례                            | 예산지원과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br>청이 학생수용 시설확충 및 각종 교육사<br>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br>환재원을 적립하기 위해 「지방교육자<br>치에 관한 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한                     | 청이 학생수용<br>업 등을 위하<br>환재원을 적                            | 용 시설확충<br>여 발행한<br>립하기 위                      | 등 및 각종 교육사<br>지방채원리금 상<br>해 「지방교육자            | 「지방교육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br>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br>다.<br>1.~2. (생략)   | ① (생략)<br>② 제1항의 F                                      | 구정에 의학<br>호의 사항·                              | 한 기금운용계획<br>을 포함하여야 한                         | 오탈자수정                        |
| 제8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교육감은<br>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br>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br>정한다.<br>1. 기금운용관: 기획관리국장   | 기금을 효율  | 적으로 관<br>호와 같이                                | 의 · 운용하기 위<br>회계공무원을 지                        | 2010.9.1자<br>조직개편            |

| 현 행  | 개                            | 정                                       | (안)   | 비고             |
|--|------------------------------|---|---|----------------|
| 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br>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   | 재정계획심의<br>에관한조례                             | 예산지원과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6조의 2</u> 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지 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3조제5항 기 인천광역시지<br>회(이하 "위원 | <mark>과 제6항</mark> 의<br>방교육재정<br>회"라 한다 | 규정에 의하여<br>계획심의위원                           | 「지방재정법」<br>개 정 |
|  | 는 위원장 및<br>15인이내의 위          | 부위원장<br>비원으로 구<br>부위원장은<br>부교육감이        | 각 1인을 포함한<br>·성한다.<br>- 당연직으로 하<br>l, 부위원장은 |                |
|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br>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   |                              |   | 학예에관한<br>용변상조례                              | 교육협력과          |
| 제3조(일비등) ① 교육위원회 및 교육<br>감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br>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br>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br>있다.              | (이하 "공무원<br>회의에 출석할          | "이라 한다<br>날 때에는 여                       | )이 아닌 위원이<br>  산의 범위 안에                     |                |
|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br>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                              |   | 속지방공무원<br>영에관한조례                            | 교육협력과          |
|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 <u>공무원직</u><br><u>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u> 이하<br>"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u>의 규정에 의</u>                       | 직장협의회의                       | 설립·운영                                   | 에관한법률」                                      |                |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br>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u>다음 각호</u>  | 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 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과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 교육위원회<br>폐지 |
| 대정에 의한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사<br>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  |             |
|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거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하는 경우 |  |             |
|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br>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br>입법예고에관한조례  | 교육협력과       |
| 제3조(입법예고) ① <생략>   | 제3조(입법예고) ① <현행과 같음><br>②경우에는 교육협  | 조직개편        |
| ④ 입법예고문을 게재의뢰한 주관과장  | 제6조(입법예고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br>④ 입법예고문을 게재의뢰한 주관과장<br>은 게재의뢰와 동시에 그 내용(당해 법   |             |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 포함한다)을 <u>학교운영지원담당관</u> 에게   | 규안 초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초안을<br>포함한다)을 <u>교육협력과장</u> 에게 송부하<br>여야 한다.<br>⑤~⑥ <현행과같음>   | 조직개편              |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 복지재정과             |
| 공유재산 관리 조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 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 국장을 말한다. | 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두는 교육감  | 교육위원회<br>폐지       |
| 은 <u>기획관리국장</u> 이 되며, 위원은 각 담당관 및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br>3. <생략>                           | 제16조에 따라 본청 및 제1관서에<br>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br>(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br>1. <현행과 같음><br>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br>은 <u>행정관리국장</u> 이 되며, 위원은 각 담<br>당관 및 과장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br>다.<br>3. <현행과 같음><br>② ~ ③ <현행과 같음><br>④ 지역교육청에는 | 2010.9.1자<br>조직개편 |
| 2. 위원장은 <u>관리국장(강화교육청</u> 은  | <ol> <li>&lt;6행과 같음&gt;</li> <li>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강화교육지원청)</li> <li>원청은 교육장으로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재정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li> </ol>   |                   |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 또는 6급(장학사)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3. ~ 4. <생략>  | 각 과장 또는 6급(장학사) 중에서 교육<br>장이 임명한다.<br>3. ~ 4. <현행과 같음>  |  |
| 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교육위원회<br>폐지                                |
|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br>물품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교육비록별회계 소관<br>물품 관리 조례  | 복지재정과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br>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br>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
|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br>국장을 말한다.   |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과<br>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 교육위원회<br>폐지                                |
| 2. <생략> 3. 지역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u>제36조</u> 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5. <생략>  | <ol> <li>2. &lt;현행과 같음&gt;</li> <li>3. 지역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li> <li>4.~5. &lt;현행과 같음&gt;</li> </ol>                                      | 「지방교육<br>자치에 관한<br>법률」개정                   |
| 제11조(주요물품의 범위) 영 제61조제<br>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물품은 교육인<br>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   | 「공유재산 및<br>물품관리법<br>시행령」<br>제61조에<br>이미 명시 |

|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
| 으로서 정리할수 있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   |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mark>공급</mark> 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수 있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                                  | 용어정비          |
| 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5. 도서대장 |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4. <삭 제>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                   | 업무간소화         |
| 인천광역시교육비록별회계소속   | 인천광역시교육비록별회계소속  | 복지재정과         |
| 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br>"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  |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교 육비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 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방재정<br>법」개정 |

| 현 행  | 개                | 정            | (안)            |                 | 비고        |
|--|------------------|--------------|----------------|-----------------|-----------|
|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 인천광역시고           | 교육청          | 계약심의위          | 리원 <b>회</b>     | 복지재정과     |
|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               | 및 운영         | 형에 관한 :        | 조례              |           |
|  |                  |              |                |                 |           |
| 제4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다음                      | 제4조(기능) 🤇        | 1) 계약4       | 심의위원회는         | 는 다음            |           |
|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정성과 적법                       | 각호에 해당히          | 나는 사형        | ·의 적정성고        | 가 적법            |           |
| 성에 대하여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                     | 성에 대하여 /         | 심의한디         | 다만, 긴급         | 급한 재            |           |
| 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                        | 해복구사업 및          | 『조달          | 사업에 관학         | 한 법             |           |
| 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                      | 률』에 따라 ፭         | <b>조</b> 달청에 | 의뢰한 계약         | 약은 제            |           |
| 외한다.                                       | 외한다.             |              |                |                 |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쟁입찰에                      | 1. 다음 각 목        | 루에 해딩        | 상하는 경쟁         | 입찰에             |           |
|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 있어서 입찰           | 참가자의         | 자격제한여          | 에 관한            |           |
| 사항   | 사항               |              |                |                 |           |
| 가. 본청 및 지역교육청 - 추정가격 <u>50</u>             | 가. 본청 및          | 지역교육         | k청 - 추정기       | 가격 <u>70</u>    | 「지방자치     |
| 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 <u>억원</u> 이상인    | 공사계          | 약(물품·용약        | ᅾ 등의            | 단체를 당     |
| 경우에는 <u><b>10억원</b></u> 이상)                | 경우에는 <u>20</u> 9 | <u>억원</u> 이  | 상)             |                 | 사자로하는     |
| 나. 본청 소속 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                      | 나. 본청 소속         | 누 기관         | 및 지역교육         | <sup>낚청</sup> 소 | 계약에 관한    |
| 속 기관 - 추정가격 <u>30억원</u> 이상인 공사             | 속 기관 - 추기        | 정가격 <u>.</u> | <u>0억원</u> 이상역 | 인 공사            | 법률 시행령」   |
|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u>5억원</u>                | 계약(물품·용          | 역 등의         | 경우에는           | 10억원            | 개정        |
| 이상)  | 이상)              |              |                |                 |           |
| 2. ~ 5. <생략>                               | 2. ~ 5. <현형      | 맹과 같음        | <del>)</del> > |                 |           |
|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사용조례                            | 인천광역시            | 교직원          | 수련원사용          | 조례              | 복지재정과     |
|  |                  |              |                |                 |           |
| 제2조(사용대상) 수련원 사용대상은 인                      | ,                | •            |                |                 | 7 0 0 0 1 |
| 천광역시교육감소속 교직원 및 교육위                        |                  |              |                |                 | 교육위원회     |
| 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우선으                       |                  |              |                |                 | 폐지        |
|  | 는 경우 인천          |              |                | `               |           |
| 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직원수 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수련원 |                  | ,            |                |                 |           |
|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 사                      |                  |              | 11/11 - 1/7    | o 큰 '시          |           |
| 용을 허가한 자로 한다.                              |                  | , •          |                |                 |           |
|  |                  |              |                |                 |           |

| 현  | 행                                   | 개 정 (안)   | 비고          |
|--|-------------------------------------|---|-------------|
| [ <b>별표 1</b> ]<br>○ 세미나실 이용료  |                                     | <b>[별표 1]</b><br>○ 세미나실 이용료                               |             |
|  | (금액단위 : 원)                          | (금액단위 : 원)  |             |
| 인천광역<br>지교육감<br>소속 교직<br>구 분 <mark>육 및</mark> 기 타<br>유위원회<br>소속 공무<br>원과 그가<br>존 | 비고                                  | 인천광역<br>시교육간<br>소속 교직<br>원과 그가<br>족     기 타 비 고           | 교육위원회<br>폐지 |
|  |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br>마다 8,000원 추가 징수 | 세미나<br>실(대) 무료 3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br>마다 8,000원 추가 정수 |             |
| 세미나<br>실(소) 무료 20,000  |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br>마다 5,000원 추가 징수 | 세미나<br>실(소) 무료 20,000 ○ 단, 3시간 초과시 1시간<br>마다 5,000원 추가 정수 |             |
|  |                                     |   |             |